#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658

발의연월일: 2024. 12. 18.

발 의 자: 박홍배・이개호・윤준병

정태호 · 김재원 · 김태년

김현정 · 김우영 · 박정현

서미화 · 김민석 · 민병덕

이광희 · 이용우 · 박지워

이연희 · 강훈식 · 복기왕

김한규 · 한준호 · 조승래

역태영 의원(22인)

## 제안이유

2024년 8월 기준 대한민국 비정규직 근로자는 845만 9천명이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 또한비정규직 이외에도 파견·하청·비정형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노동조합 가입률도 매우 저조하여 제도권의 보호를 받기 어려움.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와 관련된 업무는 비영리 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중앙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나 계획 의무 등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 여건과 정책 방향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집행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중앙 정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재정 지원을 뒷받침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이들의 권익과 복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시·도별 세부 지원계획을 매 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교육· 법률 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권익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마.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의 심의·자문을 위한 기구로 비정규직 근로자 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

하도록 함(안 제15조).

#### 법률 제 호

##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 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동시장의 건 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근로자를 말한다.
  -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 로자
  -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
  -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 5. 그 밖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에 속하지 않고 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비전형 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제3조(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 ① 비정규직 근로자

- 는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비정규직 근로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임금과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③ 비정규직 근로자는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받으며 차별 없이 일할 권리를 가진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 사업이나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기금·세제 ·금융상의 지원을 통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와 권익에 관한 조사·연구·상담·교육 에 관한 사항
  - 2.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지와 공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 3.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 4.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원 관련 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 5.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 6.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한다.
-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도별 비정규직 근로 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군·구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2. 분야별 핵심과제의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 3. 지원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 4. 행정구역 내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조사·연구 및 노동교육·상 담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 등을 통하여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형태· 근무환경 및 처우 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비정규직 관련 기관·법인·단체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결과 공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9조(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 ① 고용노동 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 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기본계획과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 2.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사업
  - 3. 근로 취약계층 소득지원 및 사회보험 가입 지원 사업
  - 4.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
  - 5.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고용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3조의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권익센터 나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 다.
- 제10조(교육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정규 직 근로자가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법률 지원 등)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정규 직 근로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 권리 보호와 관련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2조(공정거래지침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

동권익 보호, 지위 향상 및 계약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공정거래지침(이하 "공정거래지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과 민간기업·기관·협회 등의 장에게 공정거래지침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제13조(비정규직 근로자 노동권익센터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권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기본계획과 지원계획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업
  - 2.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및 교육 지원
  - 3.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 인식개선 및 홍보 활동
  - 4.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개발
  - 5.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
  - 6.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 7.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업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 계 중앙행정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 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5조(비정규직 근로자 권익보호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ㆍ자문
  - 2.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 3.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